

# 2024년도 일반직(약무직)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상시모집 공고

## 1 관련계획 및 근거 : 인사규정 제20조(신규 채용방법) 및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

## 2 모집분야(인원) 및 응시자격

모집 직종	모집부문 (직무)	채용(예정) 직급	근무병원 (부서)	모집 인원	응시자격
약무직	약사	약무4급	본원	6	[필수] 약사 면허증 소지자 - 단,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내 약사면허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함.

## 3 전형단계 및 배점기준

응시직종	모집부문(직무)	1차	2차		계	비고
		서류전형	실무(실기)시험	면접시험		
약무직	약사	적격여부심사	60점	40점	100점	

※ 1차 서류전형(적격여부심사): 응시자격 중심의 요건 심사합니다.

※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.

##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

가. 응시원서 접수기간: 라. 전형일정 참고(접수 마감일 17:00까지 마감)

나. 응시원서 접수방법: 홈페이지 인재채용 접속 <https://pnuh.recruiter.co.kr>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다.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

- 1) 채용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(사진등록, 시험장소 안내, 서류제출, 합격자 발표 등)은 지원병원별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**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**하여야 하며, **미확인 및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모집 분야의 **응시자격 필수요건**을 갖추지 못한 자는 **입사지원이 불가**하오니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3) 응시원서 작성 전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설명서, **서류적격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원서 작성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**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4) 응시원서 작성시 **항목별 작성 및 유의사항 미준수, 필수응시자격(면허 및 자격사항 등)**

미입력, 기재착오 및 누락 등은 불합격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5)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시 **본인의 이름, 성별, 생년월일(연령), 출신학교명(학력)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혼인여부, 신체적 조건(키·체중 등), 재산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**하거나 이를 **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니**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6)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7)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 접수결과(입력완료 후 접수완료 화면, 지원자의 이메일 확인)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8)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라. 전형일정

구 분		일 정	비 고
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		2024.07.01.(월) ~ 모집인원 총원시 까지	-병원 홈페이지 공고 -알리오 게시판 공고 -나라일터 공고
1차	서류적격확인	개별안내	
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개별안내	-병원 홈페이지 공고 -2차 전형 대상자 사진 등록 안내 ※ 미등록시 2차 전형 응시 불가 -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 ※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
2차	실무(실기) 및 면접시험	개별안내	
	실무(실기)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개별안내	-병원 홈페이지 공고
	실무(실기) 및 면접시험 합격자 서류제출	개별안내	-병원 홈페이지 공고
	서류적격확인	개별안내	-제출서류 적격확인
최종 합격자 발표		개별안내	-병원 홈페이지 공고
최종 합격자 서류제출		개별안내	-병원 홈페이지 공고

※ 공지 및 공고 사항은 반드시 지원한 병원(본원)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을 취합니다.

## 5

### 제출서류

제출기일	제 출 서 류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.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•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.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※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</li> </ul>
2차 실무(실기) 및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사 면허증 사본 1부.</li> <li>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(재학증명서) 1부.</li> </ul>

제출기일	제 출 서 류
합격자 발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졸업증명서에 입학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. 자세한 내용은 하단 '나' 참조</li> <li>• 약사면허신고 확인증 1부.</li> <li>-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한 경우에 한함.</li> </ul> <p>※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</p>
최종 합격자 발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직장제출용) 1부.</li> <li>※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후 해당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기 바람. 자세한 내용은 하단 '다' 참조</li> <li>• 공정채용 확인서 1부.</li> <li>•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.</li> <li>•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 동의서 1부.</li> <li>• 주민등록초본 1부.(단,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)</li> <li>• 통장사본(CMA 계좌 제외) 1부.</li> </ul> <p>※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</p>

- 가.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이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의 보훈대상이나 장애 항목에 체크한 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의 안내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항목에 체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나.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·후 학교의 졸업(학적)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를,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학사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'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'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-건강in-나의 건강관리)에서 출력이 가능하며,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만 유효하오니, 미검진자는 **최종 합격자 발표시점 최소 1개월 전에 검진**하여 서류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(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내용)가 있는 경우 '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'를 대신하여 제출 가능함.
- 라. 서류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지 않도록 합니다. 제출된 서류는 필수 응시자격 및 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 등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마.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서류를 미제출한 경우, 서류가 미비한 경우 및 온라인 지원 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바.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간(반환청구기간)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(붙임 서식)할 수 있으며,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 단,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.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
**6**      **우대사항**

대 상	관련근거	주 요 내 용
취업지원대상자 (보훈대상자)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	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해당하는 자	중·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~10% 가점 부여 ※ 경증 5%, 중증 10%

- 가.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.
- 나.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하며 취득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다.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(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). 다만, 응시인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라.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각 전형(서류, 필기, 실기 및 면접 등)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.
- 마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그 외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청 훈령)」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

## 7 합격자 결정

- 가.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격 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※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어·문장의 반복적인 작성, 항목별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작성, 항목별 답변의 미작성 또는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
- 나. 면접시험 취득 총점이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하며, 면접 취득총점의 계산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합니다.(단, 면접시험과 실무평가의 총 합계가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합니다.)
- 다.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일 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.
- 라.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실무(실기)시험점수 우수자 ③ 면접시험 점수 우수자 ④ 면접 총 합산점수 우수자 ⑤ 면접위원 최고점수, 최저점수를 제외 후 최고점수 득점자 ⑥ 면접위원 최고점수 득점자 ⑦ 면접위원 최저점수가 큰 점수 득점자 ⑧ 면접위원 최고점수, 최저점수를 제외 후 최저점수가 큰 점수 득점자 ⑨ 공인영어성적 고득점자 ⑩ 수험번호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.
- 마.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응시자격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바. 선발인원 20% 범위이내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사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사.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.

## 8 합격자 임용

- 가. 최종합격자는 2024년부터 채용순위에 따라 정원(T/O)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이며, 개인마다 임용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최종합격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, 수습기간 중 임용취소사유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최종합격자는 병원 필요시 본원(부산, 한방병원-양산소재)과 분원(양산)병원 간 전보(인사 이동)은 물론 인사관리상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최종합격자(예비합격자 제외)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임용대기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.(인사규정 제21조(채용후보자 명부))

## 9 기타 사항

- 가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병원 인사규정 제22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

### ※ 인사규정 제22조 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「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,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
11.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12. 삭제
13.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
14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- 나. 남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,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(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)
- 다.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에는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연락을 취합니다.
- 라. 채용진행 안내사항(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, 시험장소 안내, 서류제출, 합격자 발표 등)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지원병원별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**미확인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**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서류전형 합격자 중 실무·실기 및 면접전형 실시 전, **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과 생년월일을 안내기간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)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**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**실무·실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**
- 바. 면접시험 응시자(실무·실기 포함)는 본인 확인을 위한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여권만 인정) **원본을 반드시 지참**하여야 하며,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응시자는 결시(불합격)처리합니다.
- 사.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책임자가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될 수 있습니다.
- 아.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채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인력개발팀(☎ 051-240-7118, 7112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7. 1.

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